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시 고려기준 추가〉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266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정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2.
3. 회 부 일 : 2026. 1.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는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그런데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규제 정책 영향 등 거시적인 위험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 주요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기준으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와 “주요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생략)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u>4의2.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u>
<u><신설></u>	<u>4의3. 주요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u>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시 교역규모와 국제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과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함¹⁾).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①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와 ② 주요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것임.

해당산업의 기술발전과 제품 수요변화에 따라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변화하는 점, 수출규제와 관세부가 등 주요국가의 규제변화에 따라 공급망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교역규모와 국제분업구조,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과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등 현행법상 물량요소에 추가하여 ① 기술요소와 ② 정책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공급망안정 품목의 선정)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1> 기술발전에 따른 공급망안정필요품목 변화

분야	기술변화	과거 핵심품목	현재 핵심품목
반도체	초미세 공정(EUV) 기술 도입	일반 포토레지스트	EUV 포토레지스트, EUV 블랭크 마스크, 초고순도 불화수소
이차전지	전기차 확산 및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 기술 발전	코발트 중심 소재	수산화리튬, 천연흑연, 실리콘 음극재
디스플레이	LCD → OLED 산업 전환	LCD 편광판, 액정 소재	FMM(파인메탈마스크), OLED 발광 소재
친환경 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및 수소경제 확대	전통 에너지 소재	희토류 영구자석, 백금 촉매, 전력반도체 소재

자료: 산업통상부

다만 ① 기술요소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술발전의 속도를 기술요소의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제품 수요변화에 따른 산업전환 등 기술발전의 속도 외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요소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시 고려기준을 “해당 품목과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에서 “기술발전·산업전환 등 기술 관련 상황”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② 정책요소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주요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하도록 하여, 정책요소의 요건을 주요국의 규제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주요국”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공급망 위기는 품목의 특성과 교역상황에 따라 주요국이 아닌 국가에 의해서도 야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오늘날의 공급망 위기는 정부차원의 규제 뿐 아니라 기술선도적 기업 또는 시장지배적 기업의 공급정책변화에 의해서도 초래될 수 있는 점,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지정시 고려사항을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협의 정도”로 규정하여²⁾ 정부 외에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협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협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협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개량·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시 고려기준을 “주요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규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서 “외국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0

참고1

공급망안정품목 개요

- ☐ **(대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철강 등 **15개 업종**
 * '21년 기준, 15개 업종이 제조업 생산의 81.1%, 수출의 90.3% 차지
- ☐ **(선정기준)** ①대외의존도, ②국내경제 영향, ③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
- ☐ **(최초선정)**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이상 소부장 품목 중 **185개** ("23.12)
- ☐ **(개편)** 中 핵심광물 수출통제, 美 新행정부 출범, 국내 수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지정, 해제 등 개편을 통해 **190개로 확대**("25.8)

구분	업종	품목수	대표품목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16개	실리콘 웨이퍼, 불화수소 등
	이차전지	19개	수산화리튬, 흑연, 분리막 등
	디스플레이, 바이오, 전기전자	22개	FMM, 바이오배지, DC 모터 등
주력/ 신산업	자동차, 조선	23개	희토 영구자석, 와이어링 하네스, 자율주행칩, 선박용 열 교환기 등
	기계, 로봇, 항공	27개	산업용 로봇, 무인운반로봇, 수치제어기 등
기초 소재 산업	금속(철강, 비철금속)	35개	마그네슘괴, 니켈괴, 알루미늄 등
	섬유	13개	탄소섬유, 공중합 아라미드 섬유 등
	세라믹	11개	공업용 천연석영, 흑연막대 등
	화학	18개	요소, 무수불산, 브롬 등
	기타	16개	비공개